

(표준)지부 운영규정 개정(2019년 1월 29일)에 따른 신 구 대 조 표

* 운영규정 ①. ① 혼재 사용, 일괄 변경함.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<p>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부장 1인 2. 부지부장 1인 3. 총무 1인 4. 감사 2인 	<p>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p> <p><u>① 이사</u></p> <p><u>①→②</u></p> <p><u>②→③</u></p> <p><u>③→④</u></p> <p><u>④→⑤</u></p>	<p>-운영규정 제 14조(지부 임원과 감사)에 의거 지부이사 포함해야 함.</p>
<p>제12조(임원의 임기)</p> <p>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③ 임원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	<p>제12조(임원의 임기)</p> <p><u>① 임원 중 이사와 지부장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부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④ 임원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 <p><u>⑤ 이외 지부 임원의 임기는 지부에서 정한다.</u></p>	<p>- 지부임원에 이사 포함되면서 구분 필요</p> <p>-지부장도 이사와 동일하게 임기를 3년으로 함</p>

	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	제정일자	2018.01.30
	(표준)지부운영규정	개정일자	2019.01.29
		개정번호	1

개	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사유
정	0	2018.01.30	지부 운영을 위한 표준안 제정
란	1	2019.01.29	일부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(이하 ‘협의회’) 정관 제30조에 의한 지부로서, 그 명칭은 (사)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00 지부, 00시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라 하며, 약칭은 그룹홈협의회 00지부 또는 00시도아동그룹홈협의회 (이하 ‘00지부’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지부는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4호에 의거 설립된 아동공동생활가정 (그룹홈)을 지원하며, 회원 간의 연대활동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룹홈 및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○○ (도,시) (시,군,구) (읍,면,동) 번지에 둔다.

제4조(주요사업) 이 지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자격) 이 지부는 ○○에 소재하고 있는 협의회 법인의 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
- ① 그룹홈협의회 및 지부의 활동에 참여한다.
- ② 협의회 정관 및 제 규정, 지부 운영규정을 준수한다.
- ③ 협의회 총회 및 지부 총회, 기타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.

④ 회원은 협의회 및 지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이 지부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, 의결권, 임원의 선거권, 임원의 피선거권, 발언권을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, 제명, 자격상실, 자격회복 및 재가입) 회원의 탈퇴, 제명, 자격상실, 자격회복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 제9조와 운영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따른다.

제3장 임원
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 사
- ② 지부장 1인
- ③ 부지부장 1인
- ④ 총무 1인
- ⑤ 감사 2인

제10조(임원의 선임) 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.

- ① 지부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부지부장, 총무는 지부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.
-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단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지부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지부장은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지부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선출 당시 이 법인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회원에게 있으며, 그 외 협의회 임원의 피선거권은 이 법인에 가입한 지 ①년 이상 된 회원에게 있다.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①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
-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이 협의회에 의하여 제명, 해임, 기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징계 중에 있는 자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 중 이사와 지부장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지부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④ 임원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⑤ 이외 지부 임원의 임기는 지부에서 정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단, 해임된 임원이 지부장으로서 이 법인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의한 별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직은 유지된다.

-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4조(임원의 임무)

-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, 이 지부의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며, 법인의 활동 내용과 결정을 회원에게 전달하고, 회원의 의사를 협의회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는 지부 활동의 실무적인 부분과 회비 관리를 담당한다.
- ④ 지부는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 직원은 지부의 실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

-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지부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

2. 지부의 운영과 업무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② 감사는 제1항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지부 임원회의 및 지부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법인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감사가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임원회의 및 지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감사는 제1항 1호 내지 2호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지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임원의 대우) 이 지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고문 및 자문위원) 이 지부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지부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제18조(구성) 총회는 이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지부에 속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매년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며,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1. 재적회원 1/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2. 임원회의 재적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4.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20조(소집절차)

- ① 이 지부의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지부에서 다룰 안건 및 총회 개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9조 3항 1, 2, 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지부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지부장이 제2항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의결한다.

- ①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④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
- ⑤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2조(총회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의결제척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협의회 및 지부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4조(총회의 의사록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.
- ③ 지부장은 의사록을 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임원회

제25조(구성) 이 지부는 협의회 총회, 이사회, 지부총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위임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, 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6조(기능)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협의회 및 지부 총회, 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과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③ 기타 협의회 지부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

제27조(소집)

- ①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 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, 임시 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감사가 연서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부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9조(의사록)

- ①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지부장과 서기가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.
- ③ 지부장은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하고,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장 회계

제30조(재원) 이 지부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지부회비, 협의회 법인 지원금, 기부금 및 수익사업의 이익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1조(회계의 연도) 이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2조(예산의 편성과 결산)

① 이 지부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협의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3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(차입금) 이 협의회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5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부 임원회의 심의와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8장 보칙

제36조(운영규정의 변경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7조(준용규정)

① 이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정관과 운영규정,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민간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각 지부 총회에서 진행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

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부인장) 본 회가 사용할 인장은 별지 1과 같다.